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2. 1.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어명소, 서기관 김은정, 사무관 유병국 · 권지희, 주무관 김희정 · 이충수 • ☎ (044)201-3399, 3401, 3403, 3405, 3406
보 도 일 시		2016년 2월 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2. 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

-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 · 실직시 보상기간 확대(90일→120일) 등

□ 국토교통부(장관:강호인)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 · 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

-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 · 실직 보상기간* 확대: 90일 ⇨ 120일
-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,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**

*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, 폐업시 2년 보상

** LH 휴 · 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('13~'14 통계)

- 휴직시(평균임금의 70%) : 평균 410만원→546만원
- 실직시(평균임금): 평균 1159만원→1546만원

-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
 -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(토지수용권 부여시)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* 절차를 준용토록 하였으며,
 - * 토지보상법 절차: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(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)
 - 다만,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

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

-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“토지 → 토지 + 건축물”로 확대됨에 따라(법 제18조),
 -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‘지방세법’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(법인세)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“납부의무자→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변경됨에 따라(법 제12조)
 -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
- ※ 개발사업의 양수자(납부의무자)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(법인세)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

◆ 개발부담금 : 개발이익(종료시점지가-개시시점지가-정상지가상승분-개발비용*)×20% 또는 25%

* 개발비용 : 순공사비, 기부채납액, 보상비, 양도소득세(법인세) 등

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

-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(법 제11조) 절차규정*을 마련함

* 이사회 의결 → 기재부 승인, 전입시 우리부 보고

-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’, 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및 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’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,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
-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 /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(전화: 044-201-3399, 3401, 3403, 팩스 044-201-5534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공저작물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은정 서기관, 유병국·권지희 사무관(☎ 044-201-3399, 3403, 34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